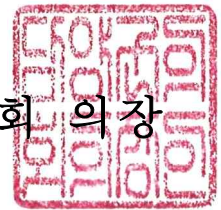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투명성 등
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

라.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

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1. 27.(8일간)

5. 의견제출

-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담양군의회의원”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

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담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담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담양군으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담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계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담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담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검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6.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담양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u> <u>윤리실천규범조례</u>	<u>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u> <u>윤리실천규범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담양군의</u> <u>회의원</u>(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 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 하기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1. ~ 6. (생 략) 7. <u>공직자윤리법</u>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u>의원이 윤</u> <u>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u> <u>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윤리심</u> <u>사의 대상이 된다.</u>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6 조에 따라 <u>담양군의회의원</u>----- -----. 제3조(윤리실천규범)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공직자윤리법</u>」----- -----. 8. (현행과 같음) 제4조(윤리심사 등) ① <u>의원이 윤</u> <u>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u> <u>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u> <u>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에</u> <u>부쳐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u> <u>하여야 한다. 다만, 담양군의회</u>

② (생 략)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와 별표 1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담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담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담양군으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담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계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

<신 설>

<신 설>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
한 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
라 담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
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담양
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
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신 설>

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담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6.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리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u> <u>권고를 거부한 경우</u> <u>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u> <u>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u> <u>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u> <u>부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u> <u>행한다.</u> <u>별지 제2호 서식</u> <u>별지 제3호 서식</u> <u>별표</u>
--	---

[별지 제2호서식]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	
성명	한글		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담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의회 의원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담양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의회의원 (인) 담양군의회의장 귀하									

[별표 서식]징계기준 (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